

## 4.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71號 1994.12.8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중 “동조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동조 제4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2 단서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가구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주소지관할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를 “주소지관할 시장·군수”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1의2. 재산평가서

제5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중 “시장·군수”를 각각 “주소지관할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제7조 제2항중 “시장·군수”를 “주소지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제8조 본문중 “시장·군수”를 “주소지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군수”를 “주소지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①영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영 제19조 단서 또는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대유기기간의 단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되, 임대유기기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제1항 본문중 “관할 시장·군수가”를 “당해 택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택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라 한다)이”로 하고, 동항 단서중 “관할 시장·군수”를 “택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로 하며, 동항제3호·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택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담금부과제외신청서)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제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상제외신청서에 부담금부과제외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본문중 “시장·군수”를 “택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군수”를 “주소지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①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토지등기부등본 및 소유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 “시장·군수”를 “주소지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제1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소유관계실태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2. 택지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규약(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경우에만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생략〉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던 서류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수치지적부 등본, 도시계획확인관계서류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던 서류중 주민등록표등본 등은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부제공>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